#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1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 서영교・이해식・박지원

김남근 • 한병도 • 김병기

김종민 • 민병덕 • 허 영

이수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「이자제한법」에 따라 연 25퍼센트를,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 100분의 27.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,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 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 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,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 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,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「이자제한법」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,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8조·제11조 및 제15조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39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##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"제8조제2항"을 "「이자제한법」"으로 한다.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대부업자 등의 이자율의 제한) 대부업자,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하여는 「이자제한법」을 따른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"를 "「이자제한법」을 위반하여 이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하여는 「이자제한법」을 따른다.

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 항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.

3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

7.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한 대부계약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8조·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대부계약의 체결 등) ① 대	제6조(대부계약의 체결 등) ①
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	
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	
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	
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	
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	
교부하여야 한다.	<u>.</u>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. 대부이자율( <u>제8조제2항</u> 에 따	4 <u></u> 「이자제한법 <u>」</u> -
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	
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	
다)	
5. ~ 12. (생 략)	5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)	제8조(대부업자 등의 이자율의
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	제한) 대부업자, 미등록대부업
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	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하여
따른 소기업(小企業)에 해당하	는 「이자제한법」을 따른다.
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	
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.9	
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.	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	

정할 때 사례금, 할인금, 수수 료, 공제금, 연체이자, 체당금 (替當金) 등 그 명칭이 무엇이 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 다. 다만,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.
-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.
-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 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 은 원본(元本)에 충당되고, 원

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 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.

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 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 다.

제11조(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하여는 「이자제한법」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.

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)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 00분의 27.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 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 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 <u>용</u>한다.

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| <삭 제>

<삭 제>

제한) 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 율의 제한에 관하여는 「이자 제한법 | 을 따른다.

<u><삭</u>제>

조달비용, 연체금의 관리비용, 연체금액, 연체기간,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 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 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 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 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

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 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19조(벌칙) ① -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• 2. (생략) <신 설>

<u>3.</u> ~ <u>5.</u> (생 략)

<신 설>

<u>2</u>	<u>「이자제한</u>
법」을 위반하여 여	이자
<u>&lt;삭 제&gt;</u>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 하여 이자를 받은 자
- 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)
- <u>7.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</u>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2. (생략)
- 3.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

  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

   를 받은 자
- 4. ~ 9. (생략)
- 10.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

 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③ (생 략)

려으	이행하지	아니하	지-
0 =		~ 다 다 만	$\sim$ 1

(2) 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4. ~ 9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